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3,200,551	22,896,017
일반회계	671,092,200	20,132,766
특별회계	92,108,351	2,763,251
공기업특별회계	73,186,136	2,195,584
공영개발특별회계	20,089,401	602,6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721,666	861,6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375,069	731,252
기타특별회계	18,922,215	567,666
의료급여특별회계	327,705	9,83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330	370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2,500	75
삼익약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700	411
소수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00	240
음성예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510,000	15,300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471,229	164,137
균형발전특별회계	2,000,000	60,00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351,170	40,535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45,115	16,3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10,765	12,323
수질개선특별회계	8,269,700	248,0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01,61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